

특별기고

내가 걸어온 상법학의 길



최완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교환교수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로스쿨 교환교수

I. 상법 교수로서의 열정과 소회

내가 처음 강단에 선 것은 1979년 3월 (명지대 법학과)이었고, 1979년 9월, 한국외대 법정학부 졸업생 최초의 모교 강사가 된 후, 1980년 3월 국립 강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로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조교수, 부교수, 교수가 되기까지 교육공무원으로서 16년을 넘게 근무하였다. 그 후 1996년 9월,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생각해보니 도합 38년이란 오랜 시간을 법학 교수란 명함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38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렸다. 1980년 강원대학교 강단에 섰을 때의 나이가 약관 27세였으니 그 때는 어디가나 가장 젊은 교수로 소개되었는데 이제는 어디가나 가장 원로 교수로 대접 받게 되니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대학 강단에 처음 섰던 그 해, 1979년은 유신 정권의 말기로서 대학 민주화의 염원이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갑작스런 몰락은 민주화를 바로 달성할 수 있다는 크나큰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게 하였으나 그것도 잠시, 1980년 등장한 신군부는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학생과 교수를 어둠과 절망에 머물게 하였다. 대학 캠퍼스 한 가운데서 운동권 학

생들의 격렬한 시위도 목도하였고 대학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번뇌하며 고뇌와 격동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학생 동태 보고서와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암울한 환경과 학교 캠퍼스가 최루탄 가스로 자욱하게 뒤덮었던 상황에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식을 줄을 몰랐다. 그 후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성의 전당인 우리 대학도 차츰 상아탑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역사의 격동기에서 젊은 대학생의 혈기와 정의감 덕택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빠른 시일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상황은 대학생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과 심한 좌절감만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업 환경과 지배 구조 변화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아 국가의 앞날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 이 암울한 현상을 조속히 탈피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젊은 날 꿈과 낭만이 있었던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의 교수 생활은 아직도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국립강원대학교에서의 교수 생활의 경험은 후일 내가 모교로 옮겨 교단생활을 하는데 있어 커다란 자산과 경험이 되었다. 특히 중요한 현안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의 젊은

교수들과의 사상적 교류와 담론은 내 젊은 날의 사유의 원천이 되었다.

모교에서의 상법 교수 생활은 나의 인생에 있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였던 시기로 기록되어야 할 것 같다.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상법학강의」, 「상법판례강의」, 「상법총론」, 「회사법요론」, 「기업지배구조법」, 「상법사례연습」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출간하였고 한국상사법학회 회장과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 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또한 법학과장 겸 대학원 법학과 주임교수를 필두로 대학원 교학처장, 대외협력본부장(외대발전캠페인 본부장), 법학연구소장, 법과대학장 등의 보직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외대 교수협의회장을 거쳐 외대 재직동문교수회장, 외대 가톨릭교수회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아 로스쿨과 학교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법학교수로서의 마지막 10년은 법학교육의 엄청난 전환을 경험한 시기였다. 법과대학이 로스쿨 체제로 바뀌에 따라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러 난관 끝에 도입된 로스쿨 체제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II. 상법학의 접근 시각

사법은 일반사법인 민법과 특별사법인 상법으로 분류되는데, 민법은 법학의 왕좌라고 불리어지듯이, 사인과 사인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상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상거래에 관한 법률로서 각 주체간의 이익을 조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이다. 다시 말하면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생활관계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특유한 상관습 등의 규범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하게 되고, 또한 이를 규율하는 실정법이 제정되면 기업생활관계에 적합한 독자적 규범으로서 상법이 성립하게 된다. 민법은 경제생활 일반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활동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생활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 반영할 수 없다. 일찍이 독일의 법학자 골드슈미트는 “상법은 하류에서는 만년설이 흘러내려 침전물과 용해되어 녹아내리지만, 상류에서는 계속 새로운 만년설을 형성하는 빙하와 같다”고 갈파한 바 있다. 이 말은 상법이 끊임없이 진화되는 경제현상과 기업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상법의 역사적 배경과, 그 역할을 고려할 때 상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무래도 민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보다는 모든 면

에서 선구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경제적 합리주의로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법은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반면에, 윤리적인 색채는 상대적으로 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상법의 진보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인간의 무한한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를 생성시키고, 기업은 이러한 수요에 따르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 기법과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도 눈부시고 진보적인 발전을 부단히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통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고, 고정적인 경향이 강한 민법의 특성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또한 경제적 합리주의를 기조로 하는 상법은 기술적인 법으로서 전통적인 요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그 내용이 공통화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법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계수가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제간의 거래가 빈번하여, 다방면에서 복잡다기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시대에는, 각국의 상법 통일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리하여 세계적 관습법이 성립하고 있고, 국제 조약에 의하여 상법의 통일이 촉진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오늘날 상법은 유동적·진보적 경향과 통일적·세계적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상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기초도 든든히 하여야 하겠지만, 민법적 사고와 틀로서는 문제된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상법학을 연구하는 상법교수는 자연적으로 민법교수에 비하여 시대를 보는 혜안을 갖게 되고,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학문 풍토 속에서 일반적으로 상법교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의 입장도 같이 이해하게 되고 너그러워지며, 역사사지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상법은 결코 기업규제법이 아니며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데 기본이념이 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은 다분히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다. 정치인들은 경제가 최악이라 걱정이라고 하면서도 인기영합주의에만 매몰되어 기업을 뛰게 만들기는커녕 반기업 정서에 편승하여 기업의 발목을 잡는데 몰두하고 있는 느낌이다. 수많은 논란과 각계의 의견을 거쳐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인 250여개의 조문을 개정한 새로운 회사법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걸핏하

면 기업 때리기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또 다시 상법 개정에 관한 논쟁을 재연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에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여 기업들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상법

우리나라 상법전은 총칙, 상행위, 회사, 보험, 해상, 항공운송의 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단행법으로 어음법과 수표법이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독법계로서 독일 상법의 영향아래 일본의 상법을 계수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제도와 수권자본제도 등은 영미법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이 되어,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상법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0호로 제정·공포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 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상법전은 총 935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상법전은 일본의 의용상법시대를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그 체제와 형식은 당시로는 상당히 선견지명을 가지고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상법학은 상법전이라는 대상을 앞에 놓고, 그것에 대

한 해석과 적용을 하는 학문이라는 점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철학같은 학문에 비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용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강조하곤 하였다. 상법학을 연구함에 있어, 상법전을 앞에 놓고, 이것과 씨름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상법전을 무시하고 학생들이 한번 백지상태에서 상법전을 구상하고 만들어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즉, 상법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상법전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본다는 자세로 접근하면, 현행 상법전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선현들이 참으로 짜임새 있고, 실용적으로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다. 비교적 잘 정제되어 있는 상법전을 접하여 연구하면 할수록 상법학의 진수를 알게 되고, 상법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상법의 이념을 상법의 내면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유지, 강화와 거래 안전의 보호라는 큰 이념이 내재되어 있다. 즉, 기업의 유지, 강화라는 이념은 기업 존립기반을 형성하고, 기업 존속을 보장하며, 기업 해체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래 안전의 보호라는 이념은 공시주의, 외관주의, 엄격책임주의, 간이신속주의, 기존상태존중주의라는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상법상의 여러 제도들

은 우리의 인생철학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암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즉, 상법은 거래의 원활, 안전,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에 관한 거래상 중요한 사항의 존재, 부존재와 그 조직의 근간을 일반에게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인간관계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일단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믿고 행동하게 되면 표시자는 그 이후 그 표시와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명한 독일법상의 외관법리와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원리로 형성되었다. 또한 상법은 기업의 집단적 거래가 간이 신속하게 체결되기 위해서 그 전제요건으로서 상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거래의 신속한 종료와 특수기업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상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책임있는 자세, 그리고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간이신속주의는 거래에 있어 간이 신속한 체결과 완료가 요청되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역시 인생을 영위함에 있어 어떤 결정을 무작정 미루거나 불안정한 상태를 오래 지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상태존중주의는 많은 사람이 관여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무효화 내지는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인생사에 있어,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소요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경우에는 무조건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 언급한 내용은 상법 규정의 일부분을 예로 든 것이지만, 상법의 각 조문을 잘 음미하고 분석하여 보면 인생을 영위함에 있어 무엇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상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법학분야에 비해서 확실히 시대를 앞서가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높아지고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이러한 상법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IV.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그동안의 교수 생활을 회고해보면 나의 주요 관심·연구 분야는 상법 중에서도 회사법,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조달에 집중되었다.

자본 조달 부분은 석사학위 논문(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법적 고찰)과 박사학위 논문(특수사채에 관한 법적 연구)의 주요테마가 되었고, 지배구조분야는 회사

법을 강의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분야는 1997년 IMF체제를 겪으면서 회사법연구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었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경영자·채권자·근로자·소비자·지역주민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매커니즘, 즉 각 집단의 권한, 책임등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체계를 말한다. 오늘날 기업지배구조는 현대기업의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전세계의 투자자, 정부, 그리고 규제기관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기업지배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정립되어 잘 다듬어지고 보완된다면 기업경영을 둘러싼 분쟁과 어려움도 해소되고 기업법이 원래 의도한 방향에 맞춰 경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면 지배구조문제는 기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둘러싼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 등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본다. 가정의 지배구조가 제대로 돌아가야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대학의 지배구조가 정립될 때 학생, 교수, 직원 간의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학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의 지배구조문제가 잘 해결될 때, 지역구성원 간의 이기주의와 마찰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 경영의 면을 보더라도 입법·사법·행정부가 각자의 직분과 위치를 지키며 각 영역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할 때 국가발전이 기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듯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는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응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며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그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가장 이상적인 지배구조와 그에 따른 원활한 자금조달 문제는 인간의 신체 조건과 혈액순환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본다. 본인은 평소 강의실에서 인간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건강한 신체조건 속에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우리 몸이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형성·작동되고,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지배구조와 자본조달의 문제는 우리상법의 필수 연구 주제로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내·외의 기업환경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올바른 기업지배구조의 정착과 운영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V. 상법학 교수도 융합의 시대에 대비해야

상법을 벗 삼아 40년을 지내보니 우리에게 상법학이라는 학문은 과연 무엇이며, 상법학은 어떻게 정의되고 접근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일찍이 독일의 법철학자 라트부르흐는 “상법은 살아 움직이는 법이고, 결코 지면 위를 통하여 습득하는 법이 아니라 실생활 거래에서 직접 적용되며 생동하는 법이다”라고 갈파한 바 있다. 이 말은 상법은 탁상공론을 배격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기업환경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 상법은 다른 법 분야와는 달리, 끊임없이 진전하는 법이고 항상 새로운 변신을 추구하는 법이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경제 현상과 기업 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평소 상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상법의 단순한 이론 연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 거래에서 상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응용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탁상공론은 학문을 위한 학문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법학의 여러 이론들을 나뉘대로 연구하다 보니, 상법학은 학문의 근본이라고 하는 철학과 접목되어 한 단계씩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선친(故 서우 최재희 박사, 서울대 교수·학술원 회원)은 일찍부터 구국의 일념으로 철학이라는 학문을 본인의 전공으로 삼으시고, 평생 서양 철학, 특히 칸트와 헤겔에 천착하여 연구에 몰두하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재에 앉아서 오로지 연구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과연 학문이란 무엇이며, 인간의 본질과 욕망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상념에 빠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학문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과연 인생사에 있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가 40여년을 교수로 지내다 보니 아버지의 학문하시던 자세와 생활태도를 새삼 존경하게 되고, 학자라 하더라도 한 우물만 깊이 파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어릴 때 기억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자형이 집에 방문하였을 때 아버지와 자형이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다. 나의 자형(서울대 광수일 교수·학술원 회원)은 서울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유학하여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최연소 교수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당시 경영학이라는 학문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생소한 학문이었다. 더구나 학문의 근본이라고 하는 철학을 연구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경영학이라는 분야를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하는 일이

쉽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버지께서는 자형을 만날 때 마다 “자네가 전공하는 학문은 무엇인가? 경영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가? 경영학을 과연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여러 번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

흔히 철학, 신학, 법학, 의학을 4대 학문이라고 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문이라고 본다면 그런 시각에서 경영학을 학문의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경영학이 신 학문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 설치되었던 경제학과가 사회과학대학으로 적을 옮기고 경영학만을 가르치는 경영대학이 신설, 분리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상과대학 교수들은 전통적인 경제학과를 뛰어넘어 경영학과라는 것이 생기고, 경영대학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못마땅해 하였다.

어느 경영학 교수는 경영학은 순수학문이라고는 하기 어렵고, 사냥에 비유한다면 사냥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였는데 나는 그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 철학계의 태두셨던 아버지와, 경영학이라는 신 학문을 공부하여 우리나라에 씨앗을 뿌린 자형 사이에서 앞으로 내가 택할 전공을 어떤 분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도 하였다. 즉, 순수학문인 철학과 새로운 학문인 경

영학 사이에서 보다 의미 있는 학문의 길을 찾는데 나름대로 고심하였다.

나는 결국 가장 전통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인 법학을 택하였고,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법 분야인 상법을 전공하게 되었다. 정년퇴임을 하게 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니 결국 모든 학문이란 다 그 나름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요사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인접학문 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상법상의 회사를 들여다보면 회사에는 주주, 경영자,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주주와 소수주주, 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 등이 어떻게 서로 상생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회사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인 회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하는 실체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학을 공부하여 회사와 관련 있는 여러 학문 분야를 두루 섭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살아있는 상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는 현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만 진정한 회사법의 이론과 학설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념에 젖게 되면, 결국 회사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경영학에 대한 기본 사상과 관념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철학과 경영학과 법학은 서로 접목되어 소통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학 교수는 철학과 경영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학문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상법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오면서 본인은 평소 강단에서의 단순한 이론법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실생활에 적용되고 살아 숨 쉬는 실용법학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에 기초한 참된 법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학도는 법의 정의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진지한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선친께서 강조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가 학문을 할 때는 ‘사무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이 말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학문의 배경·역사·원리까지 철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에 일희일비하는 경솔한 태도를 지양하고 담대한 마음가짐과 성실한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 학문을 철저히 연마해야 할 것이다.